

## 【 7 】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11.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정이유

관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양주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지원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양주희망장학재단 설립(안 제1조 및 안 제2조)

양주시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인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재단법인 양주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함.

#### 나. 재단법인의 정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며,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재단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우수교사 연수지원사업 등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함.

## 라. 재단의 기금 조성, 양주시의 출연금,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재단은 시출연금, 민간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음.

## 마.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지원 및 소속 직원 파견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 및 시의회에의 보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관의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등 재단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사.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 및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예외 규정을 둠. (안 제14조)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 일정한 시기까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경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주희망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원 등)**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 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③이사회에는 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한다.  
④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

2. 우수교사 연수지원사업
3.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제6조(재단의 기금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자체 수익 ~~수입으로~~ 이하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7조(출연금)**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 출연금 중 기금의 조성 외에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한 금액은 해당 분야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한다.

1. 정관의 제정 ·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 용도변경 · 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 · 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 이사장 · 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는 재단이 설립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 ③(양주시 향토 장학 기금의 처리) 양주시향토장학지급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양주시향토장학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

## 관 계 법령 발 췌 서

- 양주시 화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민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 민 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죽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5조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주요내용)**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들)** ①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⑦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 ⑨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

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등) ①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①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자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를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돋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

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제26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 허가)** ① 행정 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 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 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 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 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

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등록번호	총무과-0109
등록일자	2006.8.28.
결재일자	2006.8.28.
공개구분	공개

기안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김미인	1111	이진국	x	이철우	1111
협조					
예산담당	1111	기획감사담당관	1111		

**장학재단 설립(안)**

**양주시**  
**(총무과)**

# 장학재단설립(안)

\* 명 칭 : (가칭) 양주희망장학재단

\* 형 태 : 비영리재단법인(민법 제 32조)

\* 목적사업 :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 우수교사  
연수 지원 등

\* 기금목표액 : 10년 이내 150억 이상 조성

✓ 양주시향토장학기금 적립액 : 12억원

✓ 시출연금 : 128억원(단계적 출연)

✓ 시민 및 기업, 기타 출연금 : 15억원 이상

\* 추진방향

✓ 사업수행방법

- 이자 발생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

- 단, 기금이 60억 이상이 될 때까지는 시출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확보 후 기금 적립

✓ 사업계획

- 인재육성사업 : 장학사업

- 성적최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려장학금, 특기장학금,  
자립지원장학금, 기타자명 장학금 등

- 연구활동사업 지원 : 대학의 연구활동수행시 지원

- 우수교사 연수 활동 지원 : 관내 초·중·고 교사

✓ 재단 사무국 설립·운영

- 1안 : 별도 사무국 미설치(관련부서 운영)

- 2안 : 재단법인 사무국 설치·운영

⇒ 실무자의견 : 재단법인 설치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되(2안), 재단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지원 실시(직원파견, 업무지원 등)

✓ 설립시기 2007년 1월 중 장학업무 수행을 목표로 추진

## I. 목 적

- 관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리더로 양성하고자,
- 각계 각종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가칭 **양주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양주발전의 희망』을 키워나가고자 함.

## II. 기본방침

- 다양한 자질을 가진 유능한 인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양주발전의 핵심 리더 양성
-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통한 관내 학교 명문화 도모
- 시민, 각급 학교, 관내 기업체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학재단 설립 추진

## III. 설립방안

### □ 장학재단 설립개요

- 명 칭 : (가칭)재단법인 양주희망장학재단
- 설립형태 : 비영리재단법인(민법 제 32조)
- 사업범위 : 장학사업, 연구활동 지원, 우수교사 연수 지원 등

○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 10년 이내 150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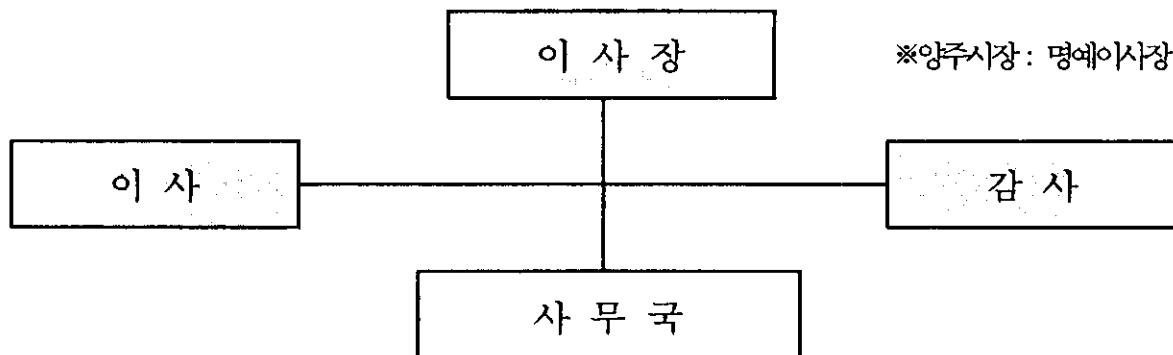
- 중기목표액 : 5년 이내 60억원 이상
- 장기목표액 : 10년 이내 150억원 이상

○ 설립근거

- 민법 제 31조 ~ 제97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장학재단 구성(안)

○ 장학재단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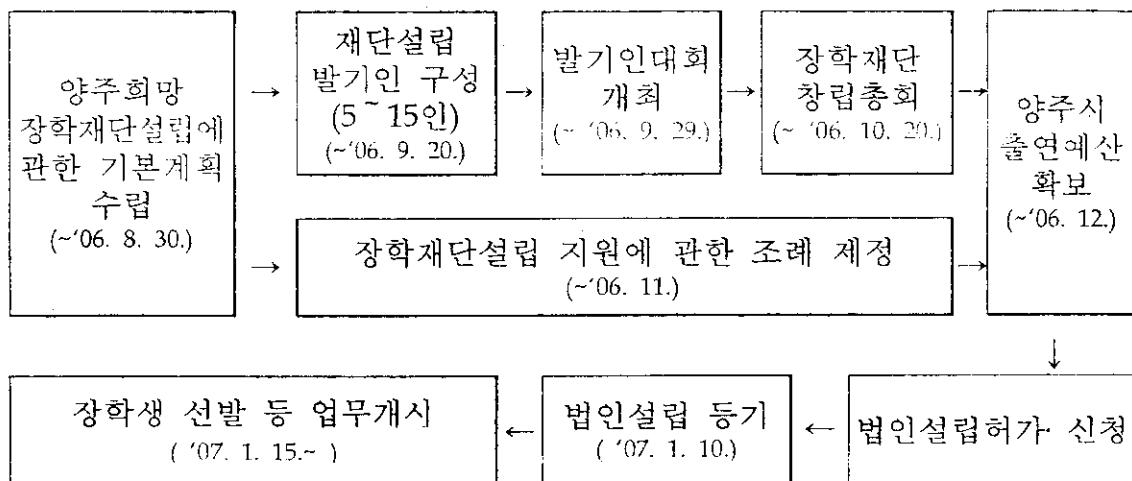


- 이사장 : 1인(관내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 이 사 : 5~15인(당연직 및 위촉직)
  - 양주시(2), 시의원(2), 상공인(3), 교육계(3), 기관·단체장(2~3), 언론계(1), 법조계(1)
- 감 사 : 2인

- 사무국 직원 : 국장 1인, 직원 1인

○ 사무국 위치 : 양주시 남방동 1-1(양주시청 내)

## □ 장학재단 설립 추진 일정



○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06.8.30.

- 예산담당부서 사전 협의 : '06.8.21.

○ 재단설립 발기인 구성 ..... '06.9.20.

- 발기취지문, 정관, 3개년간 사업계획서 작성 : 시정담당부서 지원

○ 재단설립 발기인대회 개최 ..... '06.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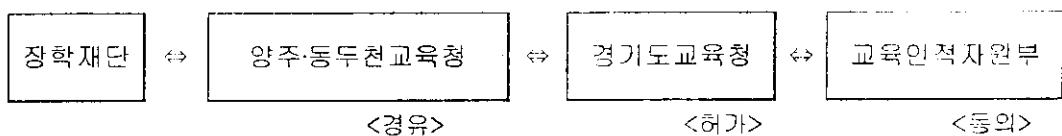
- 발기취지문 확정, 사업계획서 심의 후 확정

○ 장학재단 창립총회 ..... '06.10.20.

○ 장학재단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06.11.30.

○ 양주시 출연예산 확보 ..... '06.12.(추경)

○ 법인 설립허가신청 ..... '06.12.



○ 법인 설립등기 ..... '07.1.10.

○ 장학생 선발 등 업무개시 ..... '07.1.15.

**□ 장학재단 기금확보 방안**

○ 기금목표액 : 10년간 150억원 이상 조성

• 증기목표액 : 5년 이내 50억원 이상

- 시민 및 기업체 출연 : 연간 1억원(목표액)
- 양주시향토장학기금 전액 출연(기본재산) : 약 12억원(\*2005년 12월기준)
- 일반회계 출연 : 연간 10억원(예정)

연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 재산	시출연액	12억	10억	10억	10억	10억	13억
	총연액(증 사업액(A))		1억	1억	1억	1억	7천
	기금편입금(B)	12억	9억	9억	9억	12억3천	
인간 종연	총연액(증 사업액(A))	12억	10억	10억	10억	10억	13억3천
	기금조성액(C)	12억	10억	10억	10억	10억	13억3천
	누적액(D)	12억	22억	32억	42억	52억	65억3천

\* 사업액의 이자발생액은 4%로 하여 산정.

• 장기목표액 : 10년 이내 150억원 이상

- 시민 및 기업체 출연 : 연간 2억원(목표액)
- 일반회계 출연 : 연간 15억원(예정)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본 재산	시출연액	5억	15억	15억	15억	15억
	총연액(증 사업액(A))	5천				
	기금편입금(B)	14억5천	15억	15억	15억	15억
인간 종연	총연액(C)	2억	2억	2억	2억	2억
	기금조성액(C+B+C)	16억5천	17억	17억	17억	17억
	누적액(D)	81억8천	98억8천	115억	132억	149억

\* 사업액의 이자발생액은 4%로 하여 산정.

• 단, 출연금내에서 일정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토록함.

\* 양주시 연간 예산의 0.3~0.5% 범위 내에서 출연하되,  
예산사정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2006년 본예산 편성액 : 309,214,577천원

▶ 2006년 기준 출연액 산정

(927,643천원(약0.3%) ~ 1,546,072천원(약0.5%))

【참고2】 ★ 양주시 출연금 지원근거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② 2. 생략  
3. 용도를 시정관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1.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금화대를 위한 기타 방안 : 수익사업 추진

- 부시장님께서 검토 지시하신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은 재단의 운영이 안정되고 조성된 기금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추진  
→ 재단설립 6년 뒤인 2012년부터 추진예정(내용은 자속적으로 발굴검토)  
※ 성기도 내 10개 장학재단 중, 용인시 시민장학회·파주시 시민장학회에서 수익사업 추진 기록보기(사유: 교육청의 사업 비용인 사업전면 재감도)
- 현행 양주사랑 가드와 사용에 따른 적립수익금을 장학재단의 사업기금으로 전환 운영
- 장학기금 기탁사명의와 상학금 설치 운영

## □ 장학재단 사무국 설립·운영 방안

### [1안] 별도 사무국 미설치(관련 부서 운영) : 시흥시, 오산시

- 내용 : 재단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는 연간 50,000천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정수준의 기금적립시까지 재단설립 담당부서에서 관련 사무 추진

- 장 점 :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직접 개입·운영하므로 체계적 업무 수행 가능
- 단 점 : 장학기금운영형태와 유사하며(장학재단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 관련 담당부서의 업무가 가중됨.

## **[2안] 재단법인 사무국 설치 · 운영 : 과천시, 수원시 등**

- 내 용 : 기본재산으로 출연예정인 향토장학기금의 일부를 재단운영경비로 제외하고('준비금'이라 칭함), 준비금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재단사무국 운영. 이후,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금적립이자발생액의 일부를 재단운영비로 사용.
- 장 점 : 독자적인 사무국이 존재하므로 장학업무에의 전념 가능
- 단 점 : 기금이 목표액만큼 적립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수행에 차질 발생

※ 실무자 의견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되(2안), 직원 파견 등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재단법인의 사무를 운영 지원토록 조치(순수하게 장학사업에만 지출되는 사업액이 2억5천이 되는 2012년에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됨.)

## **IV. 사업수행(안)**

### **□ 사업수행 개요**

#### **○ 사업범위**

-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사업 지원
- 우수교사 연수 활동 지원

#### **○ 사업수행방법 : 기금운용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사업수행**

## □ 인재육성 사업 : 장학사업

### ○ 선발분야

#### • 성적최우수장학금

- 지급대상 : 관내 고교에 최고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1명(총 4명)
- 추천권자 : 고등학교장 추천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 지급기간 : 3년

#### • 성적우수장학금

- 지급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생 및 관외 고등학생, 대학생 약간명
- 추천권자
  - 관내 고교 재학생 : 학교장 추천
  - 관외 고교 재학생 : 자기추천제(학교장 추천서 첨부)
- 지급액 :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정액(※이사회 결정)
- 지급기간 : 1년

#### • 면학장려장학금

- 지급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약간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 추천권자 : 자기추천제(읍면동장 추천서 첨부)
- 지급액 :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정액(※이사회 결정)
- 지급기간 : 1년

#### • 특기장학금

- 지급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최근 1년간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자 약간명
- 추천권자 : 자기추천제(학교장 추천서 첨부)

- 지급액 :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정액(※이사회 결정)
- 지급기간 : 1년

### • 자립지원장학금

- 지급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가정형편의 급격한 악화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고등학생 약간명
- 추천권자 : 학교장 추천제
- 지급액 : 미납 등록금 전액
- 지급기간 : 1회

### • 기탁자명의 장학금

- 지급대상 : 재단의 일정한 기준에 의거한 선발자 중, 기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의 학생을 선정·수여
  - 지급액 :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정액(※이사회 결정)
  - 지급기간 : 1회
- ※ 상기 장학금 명칭은 임시 명칭이며, 장학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이사회의 의결로 달라질 수 있음.

- 장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연 1회(1박 2일) 수련회 개최

## □ 연구활동사업 지원 : 대학의 연구활동수행시 지원

- 양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수행시, 제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업수행 적정성 심의 후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지원액은 장학사업 수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내에서 지원

## □ 우수교사 연수활동 지원 : 관내 초·중·고교 교사

- 양주시의 인재양성을 위한 공로가 큰 교사 약간명에 대하여 연수활동 사회의 사업수행 적정성 심의 후 사업비 지원

## V. 기대효과

-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관내 학교를 우수 명문학교로 육성 지원하여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는 우리시에서 육성”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공기관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어있는 것에 반해 공익법인의 경우 뜻이 있는 주민 및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므로 재원의 지속적 확충 가능

&lt;붙임&gt;

## 경기도 시군 재단법인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시군명	재단법인 명칭 및 설립년도	목표액	목표액 조성기간	조성액	기금운영사항	지급시기		예산지원 (출연금)	비 고 (지원조례 제정여부)
							최초 지급 년도	매년 지급 횟수		
1	성남시	(재) 성남장학회, 1999년	-	1999년~현재	16,700	은행예치	2000년	2회	16,700	제정
2	광명시	(재) 광명애향장학회, 1999년	-	1999년~현재	2,775	은행예치 (정기예금)	2000년	2회	1,800	미제정
3	과천시	(재) 과천시애향장학회, 1993년	-	1993년~현재	20,700	은행예치	1994	1회	20,700	제정
4	의왕시	(재) 의왕시민장학회, 2000년	2,000	2000년 ~2009년	1,400	은행예치	1997	4회	200	제정
5	시흥시	시흥시 애향장학금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2005년	5,400	2006년	5,400	은행예치 (정기예금)	1992	2회	5,400	제정

연번	시군명	재단법인 명칭 및 설립년도	목표액	목표액 조성기간	조성액	기금운영사항	지급시기		예산지원 (출연금)	비 고 (지원조례 제정여부)
							최초 지급 년도	매년 지급 횟수		
6	이천시	(재) 이천시시민장학회, 1995년	10,000	1996년 ~2011년	5,300	은행예치 (정기예금)	1996	1회	2,700	제정
7	구리시	(재) 구리시시민장학회, 1994년	5,000	1994년 ~미정	3,200	은행예치 (정기예금)	1994	2회	1,800	제정
8	용인시	(재) 용인시시민장학회, 2001년	10,000	2001년 ~2006년	9,850	장학금 연구활동비	2002	1회	9,850	제정
9	수원시	(재) 수원사랑장학회, 2006년	40,000	2006년 ~2010년	976	은행예치 (정기예금)	2006	1회	900	제정
10	오산시	(재) 오산시애향장학회, 2005년	10,000	2005년~ 2015년	3,700	은행예치 (정기예금)	1993	4회	1,000	제정
11	포천시	(재) 포천시인재장학재단	10,000	2006년~ 2015년	500 (향토장학 기금)	-	-	-	500	제정